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4(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관의 임명 등) ① 법 제78조의2제6항에 따른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변호사 또는 경매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② 분쟁조정관은 분쟁조정 신청일 이후 15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법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권고·제시 등을 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관은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6조의4(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관의 임명 등) ① 법 제78조의2제6항에 따른 도매시장 거래 분쟁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변호사 또는 경매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② 분쟁조정관은 분쟁조정 신청일 이후 15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법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권고·제시 등을 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관은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221